소망교회 비즈니스 선교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 등) 본 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비즈니스 선교회 (이하 SBM : Somang Business Mission community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1항. SBM은 사업과 직장 생활 등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서로 네트웍하여 성경적 경영과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,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와 삶을 통하여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항 . 목회자의 해외 선교활동을 적극지원하고 교회의 선교활동을 지원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"마 28: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이름으로 세례를 주고..." 말씀에 비추어 그 목회자의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.

제3조 (위치) 경기도 시흥시 배곧 4로 42 (정왕동)에 소재를 두며,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의 비즈니스선교회로 한다

제4조 (사업) 수행사업항은 다음과 같다

1항 . SBM세미나 : 사례발표, 간증, 정신공유 및 계발

2항 . 타교회 및 타기관을 통한 협력 및 자체 양성 및 훈련

3항 . 기업 네트웍 및 연합(분기별) : 선교지와 SBM연결

4항 . 선교지 기업 컨설팅 및 시장조사

5항 . 중보기도회

6항 . 기업탐방 : 목회자 동행 및 선교지탐방(이해 및 헌신계기)

제5조 (조직) SBM의 의결기구로는 당회장의 승인하에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총회를 두고 실행에 필요한 조직을 둘수 있다.(만약, 두지않을경우는 당회장의 결정에 준한다)

제 2 장 회원

제6조 (회원)

1항: 정회원 - 소망교회의 등록교인인 셰례교인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되

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자를 원칙으로한다

2항: 준회원 - 1항을 기준으로 승인나기전의 상태를 말하며, 그 당시에는 회칙관련 결정권은 없다

제 3 장 임 원

제7조 (임원)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

1. 회장 1인

2. 부회장 3인이내(남녀 각1인)

3. 감사 필요시(혹은 당회장의 지시기준)

4. 총무 1인(2인도 가능)

5. 서기 1인

6. 회계 1인

제8조(임기)

- 1항. 회장의 임기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2항.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회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.
- 3항. 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, 단임으로한다.
- 4항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선출)

- 1항. 모든 임원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.
- 2항.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, 당회장의 인준을 받는다.
- 3항. 회장,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, 당회장의 인준을 받는다.
- 4항.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
제10조(임무)

- 1항. 회장은 SBM을 대표하고 SBM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항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항. 임원은 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4항. 총무는 SBM의 주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한다.

제11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항. 감사는 SBM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당회장께 보고하여야 한다.
- 2항. 감사는 임원회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 4 장 총 회

제12조(총회의 소집)

- 1항. 정기 총회는 연 1회 11월에 개최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- 2항.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① 운영위원회(당회장)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
 -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-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3항.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,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(문자 포함)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.
- 4항.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13조(총회의 정족의결수)

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재정 및 감사

제14조(회계연도)

SBM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,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회원 회비의 결정은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5조(예산편성 원칙) 회장은 SBM의 예산을 선교, 교육, 구제 및 SBM 운영 등에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.

제16조(예산 및 결산)

회장은 사업계획, 예산,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며 모든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얻는다

제17조 (회비, 경조사,회사 개업/확장)

- 1항, 회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
- 2항. 기타 찬조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동참할수 있다.
- 3항. 경조사관련 지원은 10만원(상당하는 물품)으로하되, 기타 부분은 개별적으로 동참한다
- 4항. 회사 확장(개업)관련도 10만원(상당하는 물품)으로하되, 기타부분은 자율적으로 동참한다

제 6 장 상 벌

제18조(상벌)

- 1항. 본 선교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- 2항. 본 선교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(임원회)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.
- 3항. 징계의 종류는 다음 3종으로 한다.
 - ① 주의
 - ② 경고
 - ③ 제명

제 7 장 부칙

제19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0 (경과조치)

- 1항.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2항.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(임원회)의 결정이나 관례에 따른다.

1차 개정일 : 2022년 12월 8일 (제12조1항, 제14조, 제17조1항, 2항, 3항)

> 2020년 12월 08일 소망비즈니스선교회